


##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소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분	내용													
상품명	•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	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													
가입기간	• 12개월	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10만원 이상													
가입채널	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Fi(파이), SB톡톡*))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	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li> </ul>													
이자율 (26.06.09 현재)	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</li> <li>• <b>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, 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.</b> (예시) 대 면 기준 : 중도해지이율 2.30%, 만기해지이율 3.80% 비대면 기준 : 중도해지이율 2.30%, 만기해지이율 3.80%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연, 세전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약정이율(연평균수익률)</th> <th>대면</th> <th>비대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기본금리 (중도해지 시 적용)</td> <td><b>2.30%</b>(2.32%)</td> <td><b>2.30%</b>(2.32%)</td> </tr> <tr> <td>② 추가금리 (만기해지 시 추가)</td> <td><b>1.50%</b></td> <td><b>1.50%</b></td> </tr> <tr> <td>①+② 만기해지 적용금리</td> <td><b>3.80%</b>(3.86%)</td> <td><b>3.80%</b>(3.86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약정이율(연평균수익률)	대면	비대면	① 기본금리 (중도해지 시 적용)	<b>2.30%</b> (2.32%)	<b>2.30%</b> (2.32%)	② 추가금리 (만기해지 시 추가)	<b>1.50%</b>	<b>1.50%</b>	①+② 만기해지 적용금리	<b>3.80%</b> (3.86%)	<b>3.80%</b> (3.86%)
	약정이율(연평균수익률)	대면	비대면											
① 기본금리 (중도해지 시 적용)	<b>2.30%</b> (2.32%)	<b>2.30%</b> (2.32%)												
② 추가금리 (만기해지 시 추가)	<b>1.50%</b>	<b>1.50%</b>												
①+② 만기해지 적용금리	<b>3.80%</b> (3.86%)	<b>3.80%</b> (3.86%)												
만기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 <td>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연0.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경과기간	이율	1개월 이내	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	1개월 초과	연0.1%						
경과기간	이율													
1개월 이내	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			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			
중도해지이율	• 기본금리와 동일	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자 계산식 월 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복리식</td> <td><math>원금 \times \{(1 + 이율/12)^n - 1\}</math> (n은 경과월수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이자 계산식 월 단위	복리식	$원금 \times \{(1 + 이율/12)^n - 1\}$ (n은 경과월수)								
구분	이자 계산식 월 단위													
복리식	$원금 \times \{(1 + 이율/12)^n - 1\}$ (n은 경과월수)													
원천징수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)를 징수				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가 금소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대면 계좌개설 후, 약정금리 조회 시 '기본금리'로 표기. (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지오니 유의바랍니다.)</li> </ul>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</li> <li>가입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</li> <li>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</li> <li>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li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li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li> </ul>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</li> </ul>
만기해지 사전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</li> </ul> </li> <li>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</li> </ul>
연계·재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예       아니오      ☞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음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예금주:      (서명/인)      대리인:      (서명/인)